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 제8호 단서 신설)	3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221808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

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 제8호 단서 신설)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단서 신설> 9. · 10.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다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다.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¹⁾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철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8호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을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의 매각대금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귀속되고 있음.²⁾

한편,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8.27.)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³⁾은 국가철도공단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⁴⁾의 사업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용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개량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8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는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철도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3) 동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20269호)으로 본회의에 부의함.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⁵⁾.

국가철도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현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⁶⁾에 따른 국유재산 출자 대상인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현물출자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단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⁷⁾하여 철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 중 관련 내용

현행	개정안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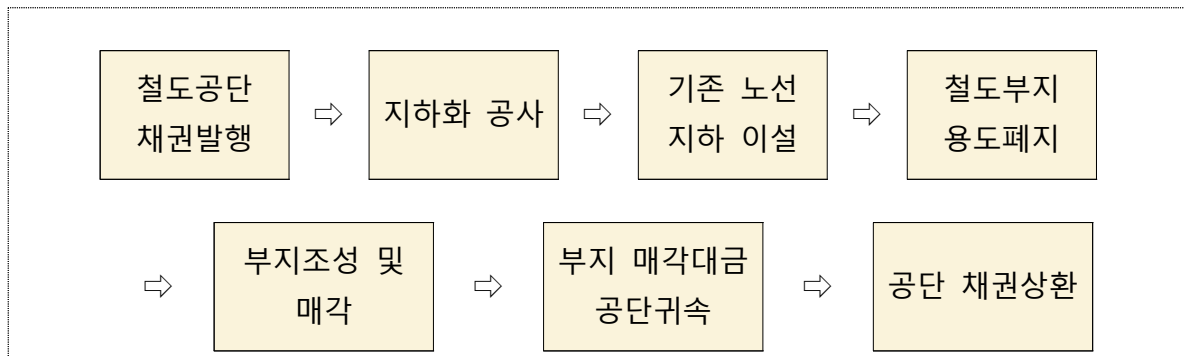
7)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기존 철도부지를 개발·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세부절차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행법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매각하여 활용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철도부지개발사업)⁸⁾의 수익금 또한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채권상환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철도계정으로 귀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수익을 채권 상환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철도공단이

8)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5조제1항제8호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국유 철도부지의 매각대금 외의 개발수익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철도계정의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까지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현행법의 세입 범위를 고려하여,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단서 신설>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u>다만,</u> <u>「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다.</u>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u>다만,</u> <u>「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제외한다</u>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9. · 10. (생략)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또한, 개정안의 시행일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의 시행일⁹⁾과 일치시키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8.27.)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지 출자가 불가하므로 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2